

2024회 계 연 도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소 관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 보 건 복 지 부	소 관
▣ 질 병 관 리 청	소 관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목 차 】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II. 심사경과	1
III. 예비비 지출 개요	2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3
V. 대체토론 요지	6
VI. 심사결과	6
VII. 부대의견	6
※ 불임: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25. 8. 27.

보건복지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보건복지부 소관

-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질병관리청 소관

-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5. 5. 30.

2. 회부일자: 2025. 6. 2.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회부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6.)

상정, 소위원회 심사, 소위의결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27.)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대체토론, 의결

Ⅲ. 예비비 지출 개요

1. 보건복지부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04억원으로, 이 중 1,977억원(98.7%)을 집행하였음.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 용 내 역
계		200,398	197,652	127	2,620	
일반 예비비	의사 집단행동 대응	125,447	125,368	-	80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의료공백 해소 지원	74,951	72,284	127	2,540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2. 질병관리청

-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2024년 하절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감염병 피해 예방에 따른 예비비 3,268억원을 편성하여 3,263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 용 내 역
계		3,268	3,263	-	5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		3,268	3,263	-	5	(감염병 피해 지원) · '24년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치료제 사용량이 1개월 동안 4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화 사망 예방을 위한 예비비요구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I -88쪽) ‘예비비를 통한 정책 홍보 문제’입니다.

정책기반 구축의 내역사업 중 ‘통합 및 전략홍보’는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은 2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예비비 90억원을 배정받아 의료개혁 홍보를 위하여 89억 9,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예측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Ⅱ-462쪽) 다음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 관련 재발 방지 노력 필요’입니다.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진료 대체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이용 1,987억원 및 예비비 1,891억원 등 예산현액 3,878억원을 마련하여 총 3,8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 추진의 소통 부족과 이에 대응한 의사의 집단행동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의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국민 피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484쪽) 다음은 ‘예비비 배정의 부적절성’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사업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3,2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성되었으며, 이 중 1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의사 집단행동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외부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개혁과제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집행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할 예비비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투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V. 대체토론 요지

- 예비비 지출 사업에 대한 대체토론은 없었음.

VI. 심사결과

1. 보건복지부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6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3건
 - 제도개선 3건

2. 질병관리청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0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0건

VII. 부대의견

- 없음

※ 붙임: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

1.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 총 6건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보건복지부	-	-	-	3	3	-	6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질병관리청	-	-	-	-	-	-	-
합계	-	-	-	3	3	-	6

2. 시정요구사항(예비비)

가. 보건복지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홍보에 대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기반 구축(7033-304)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정책기반 구축 내역사업 중 ‘통합 및 전략홍보’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책홍보, 가짜뉴스 대응의 시급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의사 집단행동 발생으로 예비비 90억원을 의료개혁 홍보에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의료개혁정책 홍보에 예비비를 우선 사용한 것은 이를 승인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은 지출에 대하여 반성하고 향후 예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 관련 재발 방지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이용 1,986억 9,600만원 및 예비비 1,890억 6,600만원으로 마련된 예산현액 3,877억 6,200만원 중 3,81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이에 대응한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생명과 직결된 국민 피해와 수천억원 대의 예산 낭비를 유발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료공백 사태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국민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재원마련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이·전용 시 면밀한 추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중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근무 수당’은 전공의 이탈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한 의료현장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게 파견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113억 1,8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이·전용으로 197억 7,200만원을 확보하는 등 310억 9,000만원의 예산현액을 마련하였으나, 이 중 41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이·전용 시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할 것		
4	파견 공중보건의사 특별활동지원금의 기본급여중복 및 과다지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근무 수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는 파견기간 동안 원소속기관의 업무를 볼 수 없음에도 1일 8시간의 기본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일 20만원의 특별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면서(월 20일 근무 시 400만원) 동시에 본부 인건비를 통해 기본급여(월 200만원 내외)를 지급한 것은 기본근무에 대하여 보수가 중복으로 지급된 것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특별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할 경우 기본급여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배정된 예비비의 전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는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타 사업으로 전용(감)하였다가,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용(증)하는 등 예산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배정받은 예비비를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4333-450)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의료개혁과제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는 국회의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운영해야 할 예비비의 제도 취지에 반함. ○ 또한 2024년 의대정원 증원 및 전공의 집단이탈 등이 발생하기 전 의료개혁을 위한 별도의 논의와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고, 의료계와의 간담회 등은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도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편의적인 조직 신설과 예산집행이 아닐 수 없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예산 투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